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8. 2
- 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8. 3
- 라. 상정일자 : 1995. 8. 12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호적법시행규칙 개정(대법원규칙 제1369호, 1995. 6. 5)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
- 종전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,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는 과태료 산정기준을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호적신고 해태자 과태료 산정기준이 해태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지역, 학력, 해태사유, 생활정도를 참작 부과하는 것에서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부과(안 제4조 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개정전의 과태료 부과는 해태기간, 해태자의 학력, 지역 등을 고려한 합산금액입니까?	○ 합산금액입니다.
○ 개정되는 과태료 부과는 개정전보다 많아진 겁니까?	○ 최고금액은 같습니다.
○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?	○ 해태기간으로 부과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개정전보다 오히려 재량권이 없어졌습니다.
○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안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까?	○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므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.
○ 개정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?	○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
4. 토론요지

가, 찬성토론

○ 관계공무원의 제량행위를 예방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.

나,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법규정을 모르고 위반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구제
하자는 의견 ⇒ 상위법에 위반되어 불가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
의 결 년 월 일	95. 8. 12 (제40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8. 3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호적법시행규칙 개정(대법원규칙 제1369호, 1995. 6. 5)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신고해태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
-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,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 과태료산정기준을 호적법시행규칙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호적신고 해태자 과태료 산정기준이 해태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지역, 학력, 해태사유, 생활정도를 참작 부과하는 것에서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부과(안 제4조 1항)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“별표 2”를 “별지 1”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과태료 부과기준은 “별표 2”와 같다.

제5조 제1항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2”와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“별지 제3호서식”을 “별지 3”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1”

(별표 2)

과 태 료 부 과 기 준 (제4조 제1항 관련)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1 월 미 만	10,000원	2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6 월 이 상	50,000원	100,000원

“별지 2”

(별지 제1호서식)

해 태 이 유 서

1. 신고(또는 신청)의무자

성 명 (남·여) 주민등록번호

본 적

주 소

2. 사건본인의 인적사항

성 명 (남·여) 주민등록번호

신고(또는 신청)의무자와의 관계

3. 사건발생현황

사건의 표시 :

사건발생년월일 : 년 월 일

사건신고년월일 : 년 월 일

해태기간(1월미만, 1월이상 3월미만, 3월이상 6월미만, 6월이상)

년 월 일

진 술 인

서명 또는 날인

부 친 시 ○ ○ 구청장

귀하

190mm × 268mm

신문용지 54kg/m²

“별지 3”

(별지 제3호서식)

과 태 로 결 정 자 료 부

신고 또는 신청의무자			위반조항	과태료액	과 태 로 부 과 기 준 (해태기간)				비 고
주	소	성 명			1월미만	1월이상- 3월미만	3월이상- 6월미만	6월이상	

268mm × 190mm
인쇄용지(2급60g/㎡)

* 작성요령

- ①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“별표1”의 근거법령인 해당조문을 기입
- ② 과태료액은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정수조례 제4조에 의한 부과기준금액 기입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 ①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<u>정함에 있어서</u> <u>해태기간, 해태이유,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</u>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“별표 2”와 같다. ② (생략)	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 ①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<u>정할 때에는</u> <u>해태기간을 기준으로 하며</u>, 과태료 부과기준은 “별표 2”와 같다. 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	행		개 정 안		
(별표2)				(별표2)		
과태료부과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				과태료부과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		
부 과 기 준		부 과 율	부 과 금 액		해 태 기 간	과 태 료
구 분	세 부 기 준		법제130조 해당	법제131조 해당		
계		100분의 100	5만원	10만원	1월미만	10,000원 20,000원
해태기간	비 중	100분의 40	20,000원	40,000원	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 40,000원
	• 1월미만	100분의 5	2,500원	5,000원	3월이상 6월미만	30,000원 60,000원
	• 1월이상 3월미만	100분의 10	5,000원	10,000원	6월이상	50,000원 100,000원
	• 3월이상 6월미만	100분의 20	10,000원	20,000원		
	• 6월이상 12월미만	100분의 40	20,000원	40,000원		
해태지역	비 중	100분의 20	10,000원	20,000원		
	• 군	100분의 5	2,500원	5,000원		
	• 시	100분의 10	5,000원	10,000원		
	• 구(특별시, 직할시)	100분의 20	10,000원	20,000원		
해태사유	비 중	100분의 10	5,000원	10,000원		
	• 무지	100분의 5	2,500원	5,000원		
	• 과실	100분의 10	5,000원	10,000원		
신고의무 자의학력	비 중	100분의 20	10,000원	20,000원		
	• 국졸이하	100분의 5	2,500원	5,000원		
	• 중·고졸	100분의 10	5,000원	10,000원		
	• 전문대졸이상	100분의 20	10,000원	20,000원		
신고의무 자의 생활정도	비 중	100분의 10	5,000원	10,000원		
	• 비과세대상	100분의 5	2,500원	5,000원		
	• 과세대상	100분의 10	5,000원	10,000원		
해태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시는 50,000원 법 제131조 해당시는 100,000원						

